「벤처 · 창업 활성화」를 위한
규제개선 추진방안

2014. 3. 20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벤처 · 창업 생태계 보완점 ····· 2

Ⅲ. 주요 개선과제 ····· 3

1. 창업 걸림돌 해소 ····· 4

2. 원활한 성장환경 조성 ····· 7

3. 회수시장 활성화 ····· 11

4. 재도전 기회 확대 ····· 12

Ⅳ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1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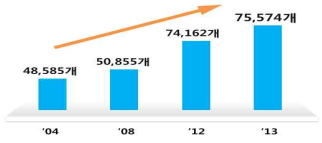
Ⅰ. 추진 배경

□ 지난해 마련한 **「벤처·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」**('13.5.15) 등에 힘입어 **창업·투자 열기가 고조**

* 엔젤 소득공제 확대, 기술혁신형M&A 법인세 감면, 벤처펀드 확충 등

○ '13년 **법인창업은 2년 연속 7만개를 돌파**하면서 **역대 최대치를 시현**

* 창업동아리수 : (12) 1,222개 → ('13) 1,833개



○ **벤처투자**도 '01년 이후 **1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**(1조 3,845억원)

* 엔젤투자자 : (12) 2,610명 → ('13) 4,870명



□ 창업·투자 열기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'선순환 자금생태계 조성'과 함께 **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생태계내 全 과정에서 규제 혁파가 필요**

○ 지난해 **「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」**('13.5.14, 6.25, 국무회의)의 후속 조치로 **'벤처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'을 마련·추진*** 중 ('13.9.27, 국가정책조정회의)

* **(추진실적, '14.2월 기준)** 총 19개 과제 중 9개과제 완료, 10개과제 정상추진

○ 그러나, 아직도 **창업→성장→회수→재도전 각 단계의 곳곳에**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**규제 요소가 존재**

➡ **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생태계 내의 선순환 고리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全 주기에 걸친 규제 해소방안을 추가 마련**

◈ **"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,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에게 창업의 길을 열 것"** ('14.2.24 중기청 업무보고)

◈ **"창업, 성장,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은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"** ('14.2.25 경제혁신3개년 계획)

Ⅱ. 벤처 · 창업 생태계 보완점

□ **(진입)** 창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,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**"고급 기술인력"의 창업은** 전체 창업기업 중 **24% 수준에 불과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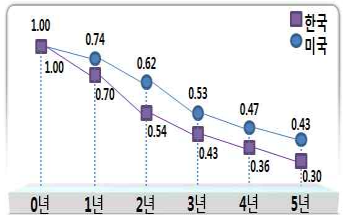
* 창업 실태조사('14) : 일반회사원(28%), 기술인력(24%), 대학(원)생(2.5%), 기타(46%)

* 창업환경 순위(세계은행) : ('08년) 126위 → ('10) 60위 → ('12) 24위 → ('13) 34위

➡ 우수인력의 **신수종 업종 창업 촉진을 위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**하고 교수·연구원 등의 **기술창업부담을 지속 완화**

□ **(성장)** 기업은 일반적으로 **죽음의 계곡*** **(3~7년) 극복과정**에서 **생존율 급감**

* 초기자금 소진시부터 본격 매출발생까지 기간
  - 한국 : 3년차(43%), 5년차(30%)
  - 미국 : 3년차(53%), 5년차(43%)



➡ **인재유치·입지 등 지원정책 자체의 대상·요건 제한**과 **회수시장 규제를 완화**하여 **민간의 참여를 촉진**하고 **성장 병목현상을 해소**

□ **(재창업) 연대보증 면제 확대** 등 재도전 부담 완화를 위한 **제도적 기반을 확충**하였으나 **현장 체감도 향상은 미미**

* 창업 의식 조사(현대경제연구원, '13.11) : 창업실패는 개인 파산을 의미한다고 응답(92.2%), 창업실패시 재기가 어려운 사회라고 응답(75.5%)

➡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강화, 회생제도 개선 등 **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한 여건을 마련**

◈ **'제2의 벤처·창업 붐'을 통해 성공신화가 많이 배출되도록 창업친화적 환경 조성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 개선 추진**

Ⅲ. 주요 개선과제

창업	진입 확대	· 창업지원법 상 창업지원 업종 확대 · 벤처확인 신청 가능 업종 확대 · 1인창조기업 지원업종 확대 및 네거티브 전환
	부담 완화	· 창업기업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확대 ·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대상 창업자 확대 · 벤처확인 평가체계 혁신능력 중심으로 개편 · 온라인 법인설립 대상 확대(주식→유한·유한책임·합자·합명)
성장	인재 유치	· 대학생 창업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·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· 휴겸직 창업 대상 및 휴직기간 확대
	입지 확보	·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 승인 ·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학교시설로 인정 · 실험실 공장 설치 요건 완화
	자금 조달	· 엔젤펀드 참여 제한 완화 · 대학의 창업기업 투자 규제 완화 · 개인의 한국벤처투자펀드 유한책임조합원 참여 허용 · 한국벤처투자펀드의 주요 출자자 범위 완화
	판로 확대	· 공공기관 직접 조달시 창업기업 불리한 규정 폐지 ·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불필요한 항목 정비
회수	M&A 및 IPO 활성화	· M&A 후 재창업시 창업으로 인정 · 코스닥시장 보호예수기간 단축 · M&A관련 규제 완화(4건) * 3.6 旣 발표
재도전	재창업 촉진	· 재창업자의 R&D사업 참여제한 완화 · 중소기업 간이 회생제도 신설 · 기업회생절차 간소화

1. 창업 걸림돌 해소

진입 확대

□ **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상 창업지원 업종 확대**

○ **(현행)**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에서는 '금융 및 보험업' 등 7개 업종을 **창업지원 제외 업종*으로 규정**

*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, 콘도 제외)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

○ **(개선) 여가관련 서비스업**(예술, 스포츠 등) 등을 **창업지원 업종에 추가**

* 업종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 중('14.2)

▶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개정 ('14.8)

□ **벤처확인 신청 가능 업종 확대**

○ **(현행) '여관업' 등 46개 업종***에 대하여는 벤처확인 대상에서 제외

* 숙박 및 음식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오락업, 이미용업 등

○ **(개선) 창조관광산업** 등을 벤처확인 업종에 추가(연구용역 착수 '14.3)

▶ 「벤처기업 확인요령」 개정('14.6)

□ **「1인창조기업 육성법」의 대상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**

○ **(현행)** '1인창조기업'을 '소프트웨어 개발업' 등 **434개 업종으로 한정**하고 있어 **신수종 업종에 대하여는 신속히 지원하는데 한계**

○ **(개선) 지원 대상 업종 규정을 네거티브로 전환**하고 **보건·의료, 교육, 사회복지서비스업** 등의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

* 지원 제외업종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('14.3월)

▶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4.11)

부담 완화

□ **창업기업 '대체산림자원 조성비' 면제**

○ **(현행)** 제조업 창업기업(3년이내)은 **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* 부담금을 면제 중이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**

*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전기부담금, 환경부담금, 물부담금 등

○ **(개선)** 면제 대상 창업부담금에 **'대체산림자원 조성비'를 추가**

* 공장용지 전용 비율(%) : 농지 54.5 산지 32.0 초지 1.2 잡종지 7.0 기타 5.3

▶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개정 ('14.8)

□ **공장설립 부담금 면제대상 창업자 확대**

○ **(현행) 개발부담금은 7년 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 기업에 대해 면제**하고 있으나 **농지보전부담금 등은 3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 기업으로 한정**

○ **(개선)** 농지보전부담금 등 **3개 부담금 면제대상 기업을 창업후 5년 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 기업**으로 확대

	현 행		개 선
개발부담금	7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업	⇒	(좌 동)
농지보전부담금·대체산림자원조성비·대체초지조성비	3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업	⇒	5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업

▶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개정 ('14.8)

□ **벤처확인제도 평가체계를 혁신능력 중심으로 개편**

○ **(현행)** 벤처확인 시, 재무성 평가(32점) 비중이 높아 **초기 기술창업 기업의 벤처 진입에 장애**

* 평가항목 : 기술성(36점), 재무성(32점), 사업주 역량 등(32점)

* 창업 3년미만 벤처기업 비중(%) : ('11) 24.6 → ('12) 24.6 → ('13) 24.1

○ **(개선)** 기술창업기업의 벤처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**기술성 평가 배점은 상향** 조정하고 재무성 평가 배점은 하향조정

▶ 「벤처기업 확인요령」 개정('14.6)

□ **「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」을 통해 설립가능한 법인유형 확대**

○ **(현행)**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 법인설립이 가능한 **"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*"을 운영**('10~) 중이나, **주식회사로 한정**('13, 3,021건 활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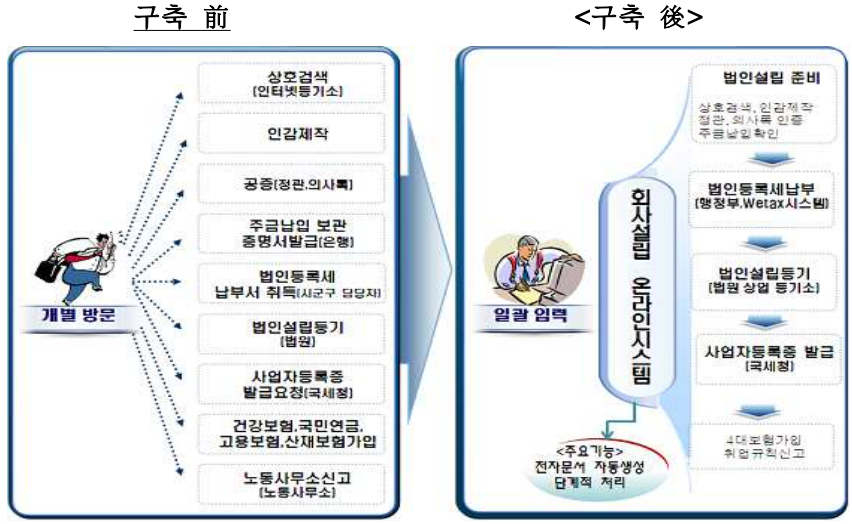
* **(효과)** 방문 기관수 축소(7개→0개), 17개 중복서류 제출 無, 창업소요일 단축(14일→5일), 법무사 위탁 비용(수수료 50만원) 절약 등

○ **(개선)** 시스템 활용 가능한 **법인유형을 유한·유한책임·합자·합명 회사까지 확대**

* 유형별 신설법인수('13, 개) : 주식 70,483, 유한 4,768, 유한책임 101, 합자 238, 합명 11

▶ 대법원「인터넷등기소」 등과 관련 표준서식 마련 및 시스템 연동('14.9)

<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>



2. 원활한 성장환경 조성

인재 유입

□ **대학생 창업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**

○ **(현행)**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창업자는 창업 수익으로 **학자금 상환과 창업시 융자받은 대출금 상환에 애로**

○ **(개선)** 특별 사유가 있을 시 학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**특별상환유예 대상*에 대학생 창업자를 추가**

* 현행 특별상환유예 대상 : 부모 사망, 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

▶ 「일반상환학자금 운영규정」 개정(교육부) ('14.8)

□ **스톡옵션 부여 대상(외부 전문가) 확대**

○ **(현행)**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임직원 외 **교수·연구원 등 외부전문가***까지 확대 운용 중

* 교원, 연구원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변리사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, 세무사 등

○ **(개선)** 바이오 업종 벤처기업 등의 전문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**의사·약사·한의사·기술사 등을 추가**

▶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개정 ('14.6)

□ **교수·연구원 창업 휴·겸직 특례 대상 및 휴직기간 확대**

○ **(현행)** 교수·연구원의 창업 촉진을 위해 휴·겸직 특례를 운영하고 있으나,

- 특례대상이 **출연연 연구원만으로 제한**되어 있고 **휴직 기간이 3년**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소 짧은 측면

* 교수·연구원/벤처기업 CEO(%) : ('06) 16.6% → ('10) 8.8% → ('12) 7.8%

○ **(개선)** 휴 겸직 특례 **대상**(출연연 연구원 → **정부투자·재투자기관 연구원**)과 **휴직기간**(3년+3년 → **5년+3년**)을 확대

▶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개정 ('14.10)

입지 확보

□ **창업기업이 공장 증설시에도 창업사업계획 승인 허용**

○ **(현행)** 창업기업의 **공장설립 관련 규정을 일괄 검토**하는 **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대상**을 **공장을 처음 설립**하는 창업자로 **제한**

○ **(개선)** 창업기업의 공장 증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기업(7년이내)이 **공장을 증설할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을 허용**

▶ 「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업무지침」(중기청) 개정('14.6)

□ **대학 창업보육센터(BI)를 '학교시설'로 인정**

○ **(현행)** 대학내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보육하고 있는 **BI를 임대사업장으로 간주**하여 **재산세를 부과** 중

○ **(개선) 창업보육사업을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**하고 **창업보육센터를 '학교시설'로 인정**

* BI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추진 : (현행) 재산가액 50% → (확대) 100%

▶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개정 ('14.8)

□ **대학·연구기관 내 '실험실 공장' 설치 요건 완화**

○ **(현행)** 교수·연구원이 실험실에 **공장*을 설립**할 수 있도록 특례를 운용하지만,

- **규모에 제한(3,000㎡ 이내)**이 있고 교수·연구원 창업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**벤처·창업기업은 활용 불가**

* 공해 발생이 적은 도시형 공장 ('12. 137개)

○ **(개선) 실험실공장 면적 제한을 삭제**하고 실험실공장 설립대상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은 **외부 벤처·창업기업까지 확대**

▶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개정 ('14.10)

자금 조달

□ **엔젤펀드 참여 제한 완화**

○ **(현행) 엔젤펀드의 조합원 자격이 개인으로 제한**되어 있어 **대학, 연구기관 등은 소규모 엔젤투자 펀드 조성이 불가**

* 엔젤펀드 : 소규모 개인 자금으로 설립된 엔젤투자용 펀드

○ **(개선)** 엔젤펀드 **설립주체(개인 → 대학·연구기관 등 추가)를 확대**하고 **엔젤펀드에 모태펀드 출자를 허용**

▶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개정('14.10)

□ **대학의 창업기업 투자 규제 완화**

○ **(현행)** 사립대학 적립금 중 일부(10%이내)를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창업한 **'벤처기업'에만 투자를 허용**하는 등 **투자대상을 제한**

* 벤처기업 평균 업력(벤처기업실태조사, '13) : 8.4년

○ **(개선) 사립대 대학적립금 투자대상 확대**(교직원·학생이 운영하는 **벤처기업 → 벤처기업+창업기업)**

▶「사립학교법」 개정('15.상)

□ **개인의 한국벤처투자펀드 유한책임조합원 참여 허용**

○ **(현행)** 한국벤처투자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 자격 요건에 **창투사 등 법인만 허용되어 개인은 펀드조성에 참여 불가**

○ **(개선)** 개인도 한국벤처투자펀드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**근거 마련**

▶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개정('14.4)

□ **한국벤처투자펀드의 주요 출자자 범위 완화**

○ **(현행)**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 **한국벤처투자펀드의 주요출자자 기준**(5%이상)을 창투펀드(10%이상)보다 **과다하게 적용** 중

○ **(개선)** 한국벤처투자펀드의 **주요 출자자 기준을 창업투자펀드와 동일하게 조정(5%→10% 이상)**

▶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개정('14.6)

판로 확대

□ **공공기관 직접 조달시 창업기업에 불리한 규정 정비**

○ **(현행)** 조달청 대행 공공조달(2.3억원 미만)에서는 **창업기업에 불리한 규정*을 정비**('13.9)하였으나 **개별 공공기관 운영지침은 미정비**

* 2.3억원 미만 입찰의 경우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 부여, 신용평가시 창업초기기업 가점 신설 등

○ **(개선) 개별 공공기관 계약지침에서 창업기업에 불리한 조항 폐지**

□ **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창업기업에 불필요한 항목 정비**

○ **(현행)** 공공기관이 **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제품을 조달할 경우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**하는 과정에서 **점검기준*이 과다**

* 설비·장비, 공장면적, 인력 필수 자격, 전기사용 실적 등을 확인

○ **(개선)** 전기사용 실적 등 **창업기업에게 불리한 규정을 정비**하고 **제품별 특성에 맞도록 설비기준도 정비**

* 예) 기계류 경우, 월평균 전기요금 기준(월 12만원)을 창업기업은 50% 인하
* 예) 통조림 제품의 경우, 보일러 설비기준(2대 이상 보유) 완화

▶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」(중기청) 개정('14.6)

3. 회수시장 활성화

□ **M&A 후 재창업시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**

○ **(현행)** 「창업지원법」에서는 **M&A 후 동종업종 재창업에 대하여는 창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**

○ **(개선)** 기업 M&A 후 **동종 업종을 재창업하는 경우,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**

▶ 「창업 및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 지침」(중기청) 개정('14.6)

□ **코스닥시장 보호예수기간 단축**

○ **(현행)**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시 최대주주 등에 대하여 **보호예수 의무기간(1년)이 유가증권시장(6개월)에 비해 장기**

○ **(개선)** 보호예수제도의 합리적 운용 등을 위해 **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의무기간 단축(예, 6개월)**

▶ 「코스닥 규정」(금융위) 개정('14.9)

□ **「M&A 활성화 방안」('14.3.6)을 통해 경직된 M&A 기준 완화**

① **(합병가액 규제완화) 상장법인**에 대한 **합병가액 산정 규제*를 완화**

* 현재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%로 제한

② **(M&A 방식 확대)** 순삼각합병* 뿐 아니라 **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병제도*** 도입

* 순삼각합병제도는 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이고, 역삼각합병제도는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

③ **(간이영업양수도 도입)** 간이합병(90%이상 모회사 보유)에 준하여 영업양도에 대해서도 자회사 **주총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절차특례 인정**

④ **(소규모·간이합병 특례 확대)** 소규모(10%→20%이하)·간이(90%→80%이상)합병 특례* 대상을 **벤처기업**에서 **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**

4. 재도전 기회 확대

□ **재창업기업의 정부 R&D사업 참여 제한 완화**

○ **(현행)** 중소기업 R&D사업의 대부분이 **은행연합회 연체등록 또는 조세체납이라는 사유만으로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**

* (사례) 소재부품 R&D(산업부), 글로벌ICT유망기술사업화·산업융합원천R&D(미래부) 등

○ **(개선)** 재창업자금 지원, 조세분납 승인 등 **정부·공공기관에서 재기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(인)은 R&D사업 신청 허용**

* 중기청 소관 R&D사업은 참여제한 완화를 旣 시행 중('13~)

▶ R&D사업관리 규정(미래부, 산업부) 개정('14.8)

□ **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신설**

○ **(현행)** 통합도산법에서는 **개인에 대해서는 간이회생제도**가 있으나 **법인에 대하여는 별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**

* (일본)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간이회생제도 운영 중

○ **(개선)** 중소기업에 대한 **간이회생제도를 신설**하여 **간이조사위원제도 도입**으로 비용부담 감소, **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** 등 추진

* (현행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)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 2/3 이상 동의

▶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4.12)

□ **기업회생절차 간소화 추진**

○ **(현행)** 회생절차 시 **진행속도는 회생가능성에 지대한 영향**을 미치는 요소이나, 기업의 회생절차 전반에 **많은 시일이 소요**

* 기업회생의 주요절차는 14단계로 회생계획인가까지 약 9개월이 소요
* 법인회생 신청 동향(법원행정처) : ('11) 712건 → ('12) 803건 → ('13) 835건

○ **(개선)** 필수적 개최로 규정된 **제1회 관계인 집회 폐지,** 조기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**사전 관계인 설명회 마련** 등 **회생절차 단축**

▶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4.12)

Ⅳ. 향후 추진계획

□ **추진계획에 반영된 관련고시 개정은 상반기 중 완료하고 법령 개정은 당정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**

□ **수혜자 입장**에서 **규제개선 내용**을 **홍보**하여 **현장 체감도 제고**

□ 현장 의견을 **주기적으로 수렴**하여 **발굴된 규제는 추가 개선**